메기랜드 / 종로캠퍼스

제32회 (2021년)

## 기초과정 (4주차)

상담 25.02) 2135-1806

## 공인중개시법령 및 실무



- 01.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. (제25회, 제26회) (0, X)
- 02. 중개대상물 확인·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. (제23회, 제25회) (0, X)
- 03.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는 권리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. (제18회) (0, X)
- 04.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,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. (제28회) ( 0, X )
- 05.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. (제21회) (0, X)
- 06.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. (제21회) ( 0, X )
- 07. 매매대금이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가 된 경우,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(제23회) ( 0, X )
- 08.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"가격"으로 매수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. (제25회) (0, X)
- 09. 개업공인중개시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보수(수수료)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. (제22회) (0, X)
- 10.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. (제28회) ( 0, X )
- 11.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. (제24회, 제25회) ( 0, X )
- 12. 무등록중개업자인 것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은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. (제19회) (0, X)
- 13. 중개의뢰인과 직접 중개대상물을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 (제24회) ( 0. X )
- 14.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. (제22회) ( 0, X )
- 15. 일방의 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. (제 24회) (0, X)

- 16.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,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, 그 중개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 (제28회) (0, X)
- 17.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(제26회) ( 0, X )
- 18.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(제22회) ( 0, X )
- 19.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,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할 때 해야 한다. (제25회) ( 0, X )
- 20.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중개업무 개시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. (제21회) (0, X)
- 21.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. (제22회) (0, X)
- 22.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. (제22회) ( 0, X )
- 23.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·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. (제20회) ( 0, X )
- 24.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으로 보증해야 할 금액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. (제 21회) ( 0, X )
- 25.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 금을 회수할 수 없다. (제27회) ( 0, X )
- 26.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. (제26회) (0, X)
- 27.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,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. (제28회) (0, X)
- 28.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. (제29회) ( 0, X )

~~~♥ 파이팅~~!!^^\*---

## ♥ 정답♥ 기초튼튼~~필숭합격~~!!^^\*

```
01-X (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다) //
02-0 //
03-0 //
04-0 //
05-0 //
06-X (매도인은 예치명의자가 아니다) //
07-0 //
08-0 //
09-0 //
10-X (초과보수에 해당된다) //
11-0 //
12-0 //
13-X (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는 금지행위로 처벌된다) //
14-0 //
15-X (쌍방대리는 금지행위에 해당되나, 일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다) //
16-X (전매차익이 없어도 투기조장에 해당된다. 판례) //
17-X (3년-3천만 이하에 해당된다) //
18-0 //
19-X (등록을 한 후, "업무개시전"까지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) //
20-X //
21-0 //
22-0 //
23-0 //
24-X (1억원 이상) //
25-X (3년이내) //
26-0 //
27-X (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) //
28-0 //
♥(다음카페) 김상진의 공인중개사법♥
```